

所得稅의 經濟的 效果와 構造上의 諸問題*

車 輒 權**

<目 次>

- I. 머리말
- II. 課稅의 公平
- III. 經濟的 效果
- IV. 構造上의 問題
- V. 끝말

I. 머리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所得稅는 여러가지 租稅 중에서 가장 公平한 租稅라고 생각되고 있다. 所得稅는 모든 所得을 종합하여 累進稅率로 과세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所得分配로부터 생겨나는 厚生, 機會 그리고 經濟力의 큰 不均等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所得稅의 負擔은 世帶의 支給能力이나 納稅者의 그 밖의 個別事情에 따라 差異를 두게 된다. 또 所得稅는 稅收의 彈力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歲入制度에 構造的 伸縮性을 도입한다.

그러나 所得稅는 可處分所得의 감소를 통하여 貯蓄을 억제하고, 勤勞意欲의 감소나 危險負擔의 증대로 勞動供給이나 投資行動을 저해할 可能性이 있다. 뿐만 아니라 所得稅는 課稅의 公平을 실현하고 個人所得의 變化에 대한 自動的 反應을 통하여 總需要의 变동을 완화시키는 이상적인 租稅지만 納稅者의 協力과 徵稅技術에 크게 의존하는 租稅이기도 하다.

所得稅의 基礎는所得의 定義와 課稅所得의 算定을 위한 必要經費나 費用控除에 관한 規定 그리고 納稅者의 人的 事情을 감안하기 위한 人的 控除와 稅率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所得課稅의 要素와 관련하여 課稅所得의 범위나 課稅單位, 課稅베이스(base)의 侵蝕(erosion), 人的 控除의 적정수준, 法人稅와의 關係 등 構造上의 諸問題가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所得稅의 公平性과 經濟的 效果를 개관한 다음에 우리나라 所得稅가 갖고 있는 構造上의 諸問題를 分析한 다음에 보다 公平하고 效率的인 課稅를 실현할 수 있는 個人所得稅制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本論文은 1988년도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大學一般)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II. 課稅의 公平

課稅의 公平에 관한 問題는 서로 다른 經濟狀況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간의 租稅負擔配分과 본질적으로 같은 經濟狀況에 있는 사람들의 取扱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垂直的 公平에 관한 문제이고 後者는 水平的 公平에 관한 문제이다.

1. 垂直的 公平

우리나라 所得稅도 個人所得에 대하여 累進稅率로 課稅하고 있으나 이러한 累進課稅는 「支給能力」에 따른 「均等犧牲」을 理論的 根據로 하여 經濟의 不平等을 완화하는 適切한 政策手段인 동시에 效率的인 方法이라는 점에서 正當化되고 있다. 즉 단일所得의 限界效用이所得上昇보다 급속히 低下된다면 「均等絕對犧牲」을 기준으로 하는 課稅는 累進性을 도입하고, 「均等比例犧牲」은 累進度를 더욱 높이며, 均等限界犧牲은 필요한 稅收를 확보할 때까지 最高水準으로부터所得을 순차적으로 거두어 들이게 된다. 더욱이 累進稅率로個人所得에 課稅함으로써 經濟의 不平等을 시정하는 方法은 市場活動에 대한 直接介入이 아니기 때문에所得 및 富의 再分配를 위한 效率的인 方法이 된다.

우리나라도 1975년에 所得稅를 綜合課稅로 一元化한 이래 租稅負擔을 所得階層마다 公平하게 배분하는 方法으로 累進課稅를 이용하여 왔다.⁽¹⁾ 初期의 累進稅率構造는 最高稅率이 70%, 最低稅率이 8%에 달하고 課稅標準階級數도 16 내지 17段階에 달하였으며 限界稅率을 조금씩遞增시킴으로서 완만한 累進度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말에 이르러 높은 限界稅率과 강한 累進度가 納稅者의 行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限界稅率의 引下와 함께 累進度를 완화하는 稅法改正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8년까지 6%에서 55%에 달하는 16段階 超過累進稅率이 적용

〈表 1〉 所得稅率의 變動

	1975	1976	1977	1979~81	1982	1983~88	1989
最低課稅標準(만원 以下)	24	42	60	120	120	180	250
稅率 (%)	8	8	8	6	6	6	5
最高課稅標準(만원 超過)	4,800	5,760	8,400	6,000	6,000	6,000	5,000
稅率 (%)	70	70	70	62	60	55	50
課稅標準階級數(段階)	16	16	17	17	17	16	8

資料：財務部, 『1988 간주된 稅法改正』, 1989.

(1) 1975년 이전에는 所得種類別 分類課稅와 綜合課稅로 二元化되어 있었고, 配當利子所得을 제외하고 모두 累進稅率로 과세하였으나 所得種類別로 差別課稅되었다.

되었으나 1988년 말에는 稅率體系의 단순화와 稅率의 引下라는 國際的 趨勢⁽²⁾에 따라 所得稅의 稅率은 最低稅率 5%에서 最高稅率 50%에 이르는 8段階 超過累進稅率로 대폭 인하조정되었다.

1988년까지 적용되었던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는 限界稅率이 課稅標準額 180만원 이하에 대한 6%(防衛稅와 住民稅 포함 7.05%)에서 年間課稅標準額 6,000만원 초과에 대한 55%(上同 70.1%)에 이르는 16段階 累進稅率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88년 말에改正된 稅率構造는 年間課稅標準額 250만원 이하에 대한 5%(上同 5.9%)에서 年間課稅標準額 5,000만원 초과에 대한 50%(上同 63.75%)에 달하는 8段階 累進稅率로 조정되었다.

1983~88年期間 중에 적용된 綜合所得稅의 累進稅率構造는 最高稅率과 最低稅率 간의 差

〈表 2〉 綜合所得稅의 稅率

1983~1988			1989				
課標階級	限界稅率 (%)	負擔率(%)		課標階級	限界稅率 (%)	負擔率(%)	
		所得稅	防・住 包 含 ¹⁾			所得稅	防・住 包 含 ¹⁾
1,800천원 이하	6	6.00	7.05	2,500천원 이하	5	—	—
1,800천원 초과	8	6.56	7.71	2,500천원 초과	10	5	5.875
2,500 "	10	7.54	8.86				
3,500 "	12	8.75	10.28	5,000 "	15	7.5	8.812
4,800 "	15	10.24	12.03				
6,300 "	18	11.89	13.97	8,000 "	20	10.312	12.117
8,000 "	21	13.71	17.48				
10,000 "	24	15.77	20.10	12,000 "	25	13.541	17.265
12,500 "	27	17.94	22.88				
15,500 "	31	20.35	25.94	17,000 "	30	16.911	21.562
19,000 "	35	22.89	29.19				
23,000 "	39	26.23	33.44	23,000 "	40	20.321	25.915
29,000 "	43	29.85	38.06				
37,000 "	47	33.50	42.72	50,000 "	50	30.950	39.461
47,000 "	51	37.29	47.55				
60,000 "	55						

資料：財務部, 『1988 간추린 改正稅法』, 1989.

註 : 1) 防衛稅 [所得金額 840萬원 以下 所得稅額의 10%]
[所得金額 840萬원 超過 所得稅額의 20%]

住民稅 : 所得稅 算出稅額의 7.5%

(2) 美國은 1986년 10월 22일, 「1986년 稅制改革法」의 成立으로 1988년부터 個人所得稅의 稅率을 15%와 28%의 2段階로 대폭 축소하였다. 英國은 1988년도 稅制改革으로 所得稅의 基本稅率을 27%로부터 25%에 인하하는 한편 最高稅率을 60%에서 40%로 인하하는 동시에 종전의 5단계 割增稅率을 40%로 단일화하여 所得稅의 稅率構造를 25%와 40%로 2段階화하였다. 日本도 1988년도부터 所得稅의 稅率段階을 종전의 12段階로부터 6段階로 대폭 축소하였다.

〈表 3〉課稅標準階級別 綜合所得稅 申告(1988歸屬年度)

(單位: 千名, 10억원, %)

	申 告 人 員	申 告 所 得 金 額		算 出 稅 額	
		構 成 比		構 成 比	
180만원 以下	269.8	38.4	476.3	9.5	13.3
180만원 超過	75.0	10.7	235.2	4.7	10.0
250 "	66.4	9.4	265.5	5.3	13.9
350 "	62.2	8.8	320.6	6.4	20.4
480 "	49.9	7.1	320.8	6.4	25.6
630 "	39.8	5.6	330.5	6.6	32.0
800 "	32.3	4.6	322.4	6.4	37.3
1,000 "	27.5	3.9	330.3	6.6	46.8
1,250 "	21.8	3.1	324.1	6.5	50.8
1,550 "	16.1	2.3	294.1	5.9	54.3
1,900 "	12.0	1.7	264.1	5.3	54.3
2,300 "	10.5	1.5	281.6	5.6	66.8
2,900 "	7.6	1.1	253.3	5.1	69.1
3,700 "	5.0	0.7	211.7	4.2	65.6
4,700 "	3.1	0.4	166.8	3.3	58.3
6,000 "	4.9	0.7	609.7	12.2	278.8
合 計	703.7	100.0	5,006.8	100.0	897.1
					100.0

資料：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9.

異가 를 뿐만 아니라 조금씩 限界稅率을遞增시키는構造가 되어 있다. 그러나 1989年度부터 적용되는 改正 累進稅率構造는 最高稅率과 最低稅率의 差異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課稅標準階級幅이 확대된 반면에 그 數는 줄어들고, 5% 내지 10%씩 限界稅率이 채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稅率의 全面的 引下調整와 함께 稅率構造全體로서 累進度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1988歸屬年度 綜合所得稅의 申告資料에 의하면 納稅者의 49.1%는 課稅標準額이 250만원 이하의 階級에 속하고 있으나 1988年末 稅率改正으로 平均負擔率이 종전의 6% 내지 6.56 %에서 5%로 인하되었다. 이와 함께 課稅標準額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高所得層은 1988歸屬年度에 納稅者의 0.7%(4,873名)를 점하고 算出稅額의 19.6%를 차지하였으나 이들의 平均負擔率도 課稅標準額 6,000만원 기준 종전의 37.29%에서 34.12%로 인하되었다.

우리나라의 所得課稅에 있어서도 納稅者의 所得에서 課稅最低限을 구성하는 所得控除分을 차감한 課稅所得에 대하여 그 크기에 따라 축차적으로 높은 限界稅率을 적용하는 超過累進稅率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이같이 所得控除와 超過累進稅率을 결합할 경우 最高稅率과 最低稅率 간의 差異가 를수록 또 最高稅率이 적용되는 所得階級區分(bracket)이 一定하

다면 課稅最低限이 높을수록 全體로서의 累進度가 강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所得稅의 累進構造가 所得再分配機能과 歲入調達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所得이 全額 課稅베이스(base)에 산입되어 綜合課稅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현행 所得稅는 그러한 基本的인 要件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각종 所得에 대한 非課稅, 分離課稅, 特別控除 등 特別措置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稅率構造의 강한 累進性을 개별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있다.

2. 水平的 公平

所得稅가 支給能力에 따라 公平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支給能力의 尺度가 되는 所得을 명확하게 定義하고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經濟狀況에 있는 사람은 같이 취급한다는 水平的 公平을 확보하여야 한다. 發生概念에 의하면 所得은 消費와 純資產 增加分의 合計로 定義된다[Simons (1938, p. 50)]. 그런데 이 消費에는 自家消費나 雇傭主가 부담하는 現物給與 및 年金·保險에 대한 酿出 등 附加給付(fringe benefit), 自家에 대한 歸屬賃料와 같은 歸屬所得에 의하여 대표되는 潛在的 消費能力도 포함된다. 또 純資產의 增加에는 賣却의 如何를 불문하고 發生主義에 기초를 둔 土地나 株式의 純增加價值額, 즉 資本利得(capital gain)도 포함된다.

1) 人的 控除

엄밀한 의미에서 個人所得稅가 「같은 經濟狀況에 있는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는 原理에 따라 課稅에 있어서 水平的 公平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정의된 所得概念에 의거하여 그 源泉이 어려하든 모든 所得을 綜合하고 納稅者와 그 扶養家族에 대한 人的 控除만을 용인하여야 한다[Pechman (1986, p. 45)]. 원래 人的 控除制度는 納稅者와 그 扶養家族의 最低生計費를 非課稅하기 위해 마련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各國이 채

〈表 4〉 年度別 人的 控除額의 變動 (單位: 千원)

	1975	1978	1980~81	1982~88 ¹⁾	1989
1. 基礎控除	180	240	300	300	480
2. 配偶者控除	120	240	300	420	540
3. 扶養家族控除	60	120	240	240	480
4. 5人家族 人的控除 合計(A)	480	840	1,320	1,440	2,460
5. 1人當 GNP(B) (A/B, %)	286	649	966~1,171	1,297~2,952	...
6. 全都市勤勞者家口 年平均生計費(C) (A/C, %)	683	1,318	2,106~2,561	2,869~5,447	...
	70.3	63.7	62.7~51.5	50.2~26.4	

資料：財務部, 『1988 간추린 稅法改正』, 1989; 經濟企副院 調查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89.

註：1) 1988년 1人當 GNP는暫定.

택하고 있는 人的控除의 水準은 거의 모두 社會的으로 허용될 수 있는 最低生存水準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水準은 아니며 주로 低所得者를 課稅對象에서 제외하는 한편 所得階級이 낮은 部分에 대한 累進課稅效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1988年 현재 5人家族基準 人的控除의 合計額은 年 144만원으로써 1人當 GNP의 48.8%, 全都市勤勞者家口 年平均生計費(消費支出)의 26.4%에 해당하였으며 同 勤勞者家口 年平均食料品費(1,858千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1982年부터 人的控除水準이 계속 固定되었던 데 기인하였으나 1988年末 稅法改正에서 5人家族基準 人的控除水準은 종전보다 70.8 %가 인상되었다.⁽³⁾

人的控除에는 納稅者와 配偶者 및 扶養家族을 위한 控除 이외에 한 世帶를 구성하는 家族의 特別한 事情을 고려하는 特別控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扶養家族인 障碍者에 대한 障碍者控除制度(연 48만원 所得控除)와 居住者 및 그의 生計를 같이하는 扶養家族 중 65歲이상인 者를 대상으로 하는 敬老優待控除制度(연 36만원 所得控除)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特別한 人的控除는 特別한 事情에 의한 추가적 經費를 참작한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直接補助에 가름하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人的控除(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등 基礎的 人的控除와 障碍者控除 등 特別한 人的控除)는 累進所得稅의 중요한 要素이지만 그 밖에 所得의 源泉이나 用途에 따라 非課稅나 所得控除 및 稅額控除 또는 特別한 優待措置가 광범하게 실시된다. 所得의 源泉이나 用途에 따른 差別課稅措置는 분명히 「水平的 公平」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課稅의 差別化 때문에 「課稅베이스의 侵蝕(erosion)」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Pechman (1986, pp. 68-76)].

2) 所得源泉에 따른 差別化

所得源泉에 기초를 두고 있는 差別化 형태에는 勤勞所得控除, 退職所得控除, 創作所得特別控除,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優待課稅, 配當稅額控除, 資本利得에 대한 優待課稅, 自家消費나 歸屬賃料에 대한 非課稅, 그 밖의 무수한 特別한 優待措置가 포함되어 있다. 勤勞所得控除은 勞動力의 減價償却 또는 課稅目的上 용인할 수 없는 個人的努力으로부터 발생하는 勤勞所得의 必要經費에 대한 概括的인 控除라고 생각되고 있다[Pechman (1987, p. 92)]. 현행 制度는 紿與總額에 따라 控除率이 체감되는 동시에 控除限度를 두어 低所得勤勞者에 한하여 稅負擔輕減效果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3) 1982~88년 기간中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는 22.9%가 상승하였다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89).

〈表 5〉 勤勞所得控除額의 變動

	1975	1978	1980~81	1982	1983~88	1989
賞與特別控除				廢止	—	—
日定給與額에 대한 控除率(%)	100%	400%	400%	—	—	—
年間控除限度額(만원)	12	40	52	—	—	—
勤勞所得控除						
◦ 給與額	—	—	—	88만원 以下	94만원 以下	140만원 以下
控除額				全額	全額	全額
◦ 給與額	—	—	—	88~300만원 以下	94~300만원 以下	140~400만원 以下
控除額				超過額의 20%	超過額의 20%	超過額의 25%
◦ 給與額	—	—	—	300만원 超過	300만원 超過	400만원 超過
控除額				超過額의 10%	超過額의 10%	超過額의 15%
◦ 控除限度(만원)	18	40	54	170	170	230
◦ 日傭勤勞者(日當 원)	3,700	6,700	10,300	14,100	15,000	25,000

資料 : 財務部, 『1988 간추된 稅法改正』, 1989.

所得課稅가 綜合所得稅로 一元화될 初期에는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概算控除로서 勤勞所得控除制度와 賞與金의 수령에 따른 稅負擔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賞與特別控除制度에 의하여 中產層以下의 勤勞者의 稅負擔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勤勞所得控除의 實効性을 높이는 한편 低所得勤勞者의 稅負擔輕減效果를 높이기 위해 賞與特別控除制度를 폐지하고 勤勞所得控除를 總給與額에 따라 控除率이 체감되는 制度로 전환시키고 控除限度額도 대폭 上向調整하였다. 이어 1983년부터는 低所得勤勞者에 대한 控除惠澤을 확대하였으나 1988년말 稅法改正에서는 中產層以下 勤勞者에 대한 控除惠澤을 모두 확대하는 方向으로 給與額에 대한 控除率과 控除限度를 다같이 上向調整하였다.

人的 控除(基礎的 人的 控除)와 勤勞所得控除은 勤勞所得에 대한 課稅最低限을 규정하는 基本的 要因이며 改正된 所得控除額 및 勤勞所得控除額의 引上에 따른 課稅最低限의 引上과 稅率構造의 조정에 따른 勤勞所得稅 實効負擔의 变동을 보면 〈表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月給與額이 40만원(年 480만원)인 勤勞者의 所得稅負擔率(實効稅率)은 5人家族基準 1.8%에서 0.17%로 輕減率이 90.3%에 달하고 있다. 또 月給與額이 70만원(年 840만원)인 勤勞者의 所得稅負擔率은 종전의 5.8%에서 2.8%로 51.1%가 輕減되고 있다. 1988歸屬年度 勤勞所得 課稅資料에 의하면 月給與額이 70만원(年 840만원) 이하인 勤勞所得者는 勤勞所得者總數의 77.3%를 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 때 勤勞所得者의 3分의 2 이상이 종전보다 51.1% 이상 100%에 달하는 所得稅輕減惠澤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表 6〉 人的控除 및 稅率改正에 따른 勤勞所得階層別 月稅負擔比較¹⁾

(單位: 원, %)

月給與	從前		改			正	
	稅額	實效稅率(%)	稅額	實效稅率	輕減額	輕減率	
월 30만(연 360만)	2,618	0.8	—	—	△ 2,618	△ 100	
40만(연 480만)	7,349	1.8	708	0.1	△ 6,641	△90.3	
50만(연 600만)	15,360	3.0	5,166	1.0	△10,194	△66.3	
70만(연 840만)	40,750	5.8	19,916	2.8	△20,834	△51.1	
100만(연 1,200만)	94,300	9.4	59,250	5.9	△35,050	△37.1	
150만(연 1,800만)	217,350	14.4	161,250	10.7	△56,100	△25.8	
200만(연 2,400만)	376,416	18.8	295,583	14.7	△80,833	△21.4	

資料：財務部, 『1988 간추린 改正稅法』, 1989.

註：1) 5人家族基準。

한편 退職所得은 일반적으로 오랜 동안의勤務에 대한勤績報償의 給與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그總額은 보통 退職時의 給與水準과 勤績年數에 따라 결정된다. 退職所得은勤務에 대한 給與라는 점에서 給與所得의 變形이라고 할 수 있으나一時에 支給되고 또 擔稅力도 약하다는 점에서 課稅의 累進性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한 輕減措置가 강구된다.⁽⁴⁾ 우리나라 退職給與額의 50%를 공제하는 退職所得特別控除와 勤績年數에 따라 控除額이遞增되는 退職所得控除制度를 두고 있다. 또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寫眞 등 創作을 장려하기 위하여 創作所得에 대하여는 年 360만원의 特別控除를 용인하고 있다.

또한 配當·利子所得에 대하여는 課稅上 각종 優待措置가 적용된다. 먼저 利子所得에 대하여 보면 國民貯蓄組合貯蓄의 利子와 公益信託의 利益은 非課稅가 되고, 私債利子를 제외한 實地名義인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10%의 稅率로 源泉分離課稅가 된다.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大株主에 대한 配當을 제외한 配當所得이 역시 10%의 稅率을 적용하여 源泉分離課稅가 될 뿐만 아니라 配當所得이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는 경우 法人稅와 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의 二重課稅를 완화시키기 위해 配當稅額控除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配當稅額控除額은 控除對象配當所得金額에 따라 1,000만원 이하에는 12%, 1,000만원 超過分에는 6%의 控除率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에 綜合所得金額에 대한 配當所得金額의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을 控除限度額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金融資產의 實名化를 유도하기 위해 非實名金融資產所得에 대하여는 實名金融資產所得보다 높은 差等稅率를 적용하고 있으나 1988년말 稅法改正에 시 非實名金融資產所

(4) 우리나라 所得稅法은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을 區分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所得」으로 定義하고 있다.

〈表 7〉 非實名金融資產所得에 대한 差等課稅變動內譯

(單位 : %)

	實 名 分	非 實 名 分		
		1983. 7. 1 이 후 발생분(50% 가산)	1985. 1 이 후 발생분(100% 가산)	1989. 1. 1 이 후 발생분(300% 가산)
所 得 稅	10	15	20	40
教 育 稅	5	5	5	5
防 衛 稅	1(2)	1.5(3)	2(4)	4(8)
住 民 稅	0.75	1.125	1.5	3
實 負 擔 率	16.75(17.75)	22.625(24.125)	28.5(30.5)	52(56)

資料：財務部, 『1988 간추린 改正稅法』, 1989.

註：()는 所得金額이 840만원 초과시 임.

得에 대한 差等課稅가 보다 강화되었다. 즉 1985년 1월 1일부터 非實名金融資產所得에 대해서는 源泉徵收稅率의 100%를 加算하도록 하던 것을 1989년 1월 1일 이후 發生分에 대하여는 差等稅率幅을 300%로 대폭 확대하였다.

元來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上의 優待措置는 不規則的인 收入을 所得에서 제외하는 英國의 所得概念에서 생겨났다.⁽⁵⁾ 오늘날 그러한 措置는 投資全般, 특히 危險資產에 대한 投資의 魅力を 높여 經濟成長을 촉진한다는 誘因上의 根據와 長期에 걸쳐 發生한 資本利得을 실현된 時點에서 累進稅率을 적용, 完全課稅한다는 것은 不公平하고 또 資產의 賣却이나 移讓을 저해하게 된다는 理由로 옹호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株式의 資本利得에 대하여는 完全非課稅를 하고 있고, 土地와 建物, 不

〈表 8〉 讓渡所得稅의 累進稅率構造

(單位 : %)

區 分	保 有 期 間	住 宅 型	稅 率 (1980~88)	改編稅率體系(1989~)		
				課 稅 標 準	稅 率	
2년 以上	一 般	國 民 住 宅	40(51)	3,000만원 以下	40(51)	
				3,000~ 6,000만원	45(57.4)	
				6,000~10,000만원	50(63.8)	
	2년 未滿 未登記轉賣		30(35.3)	10,000~50,000 //	55(70.1)	
			50(63.8)	50,000만원 超過	60(76.5)	
			75(95.6)	—	左 同	

資料：財務部, 『1988 간추린 稅法改正』, 1989.

註：() 内는 防衛稅, 住民稅 合算.

(5) 英國의 稅法은 當初 資本利得을 一時的 所得으로 畿아 株式去來人의 所得을 제외하고 所得稅를 非課稅하였다. 그러나 投資所得을 심게 資本利得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資本利得이 所得과 다른다는 생각이 非現實의이라는 것이 인식된 이후 資本利得에 課稅하되 所得보다 低率課稅하는 불행한妥協案이 생겨났다[Kay and King (1983, p.75)].

動產에 관한 權利의 讓渡所得 그리고 土地超過利得에 대한 課稅制度를 두고 있다. 종래 讓渡所得稅는 土地와 建物, 不動產에 관한 權利의 讓渡에 따라 발생하는 實現된 資本利得에 대하여 讓渡資產別保有期間別로 定率課稅하였으나 1988년 말 稅法改正에서 應能負擔의 實현과 財產所得에 대한 重課, 不動產投機抑制의 實效를 기하기 위해 個人別로 年間 발생한 讓渡差益을 모두 合算하여 그 讓渡差益의 크기에 따라 綜合所得稅率과는 별도의 超過累進稅率을 적용하여 그 稅率을 讓渡所得稅負擔이 종전보다 重課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讓渡所得課稅에 있어서도 1世帶 1住宅(高級住宅 제외)이나 8년 이상 自耕農地의 양도 또는 農地의 交換·代土時에는 일정한 要件에 따라 非課稅된다. 또 2년 이상 保有한 不動產의 讓渡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控除(年 150만원)와 讓渡所得特別控除(物價上昇控除), 長期保有特別控除(5년 以上 保有에 대하여는 讓渡差益의 10%, 10년 以上 保有에 대하여는 讓渡差益의 30%를 각각 控除)가 적용된다.⁽⁶⁾ 한편 非課稅配當所得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 그리고 非上場大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 등을 제외한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일정한 限度額 内에서 稅額控除가 적용된다.⁽⁷⁾ 또 國外勤勞者の 國外所得에 대하여도 일정 限度 内에서 稅額控除가 적용된다.⁽⁸⁾

그 밖에 所得稅法이나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에 따라 일정한 所得源으로부터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가 免除되거나 輕減된다. 所得稅法은 i) 政府間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紿與 ii) 外國人 投資企業에 종사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이 받는 紿與 iii)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에서 발생하는 事業所得에 대하여는 일정한 基準에 따라 계산한 所得稅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租稅減免規制法의 规定에 따라 i) 外貨表示債權의 利子所得, ii) 創業中心企業의 事業所得, iii) 技術所得, iv) 農工地區 入住企業의 事業所得, v) 醫療脆弱地域 病院開設에 따른 所得, vi) 寄宿舍運營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vii) 外國

(6) 1988년도 讓渡所得稅 賦課狀況을 보면 讓渡所得特別控除는 讓渡差益의 14.4%, 讓渡所得控除額은 同 6.4%에 상당하여 讓渡差益에서 必要經費와 각종 所得控除를 제외한 課稅標準은 讓渡差益의 67.5%에 불과하다. 또 平均稅率(算出稅額／課稅標準)은 42.3%에 달하지만 減免稅額과豫定申告納付稅額을 제외한 決定稅額의 課稅標準에 대한 比率은 29.2%에 불과하다.

(7) 法人稅와 所得稅의 二重課稅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1983년부터 (1) 配當所得金額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2%, (2) 配當所得金額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합한 金額을 공제한다. 1988年 속인도 綜合所得稅 申告資料에 의하면 稅額控除 合計額은 500억원(算出稅額의 5.6%)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配當稅額控除는 104억원(稅額控除合計의 20.8%)으로 집계되어 있다.

(8) 國外勤勞, 遠洋漁業, 外國航行船舶, 航空機 등 國外勤勞에 따라 積得한 所得에 대하여는 綜合所得算出稅額에 綜合所得金額에서 國外勤勞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의 50%에 상당한 金額을 공제한다. 美國軍에 고용된 勤勞者の 경우 同 控除率은 20%이다.

人技術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所得稅의 全額 또는一部가 감면되거나 所得稅가 免除된다.

끝으로 自家에 歸屬하는 賃貸料는 非貨幣所得인 동시에 그 推定이 쉽지 않기 때문에 課稅所得에서 제외되고 또 社會保障給與(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등)는 受給者가 大부분 經濟的으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非課稅가 된다. 그 밖에 自家消費나 家庭內 個人的 서비스도 客觀的인 評價가 매우 어려워 課稅對象에서 제외하게 된다.

3) 所得用途에 따른 差別化

所得稅는 純所得에 대한 課稅를 原則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所得을 가득하기 위한 불가결한 經費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所得稅도 不動產所得이나 事業所得, 其他所得은 각기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勤勞所得도 收入金額에서 保險料控除와 醫療費控除, 教育費控除 등 所得의 用途에 기초를 둔 각종 控除와 勤勞所得控除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 밖에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綜合所得이 있는 納稅者가 일정 한도의 寄附金을 지급하였을 때도 寄附金特別控除가 용인된다.

한편 國民貯蓄을 하는 경우나 우리社主 組合員이 株式을 취득한 후 貯蓄으로 그 株式價額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退職金을 그 法人の 株式으로 취득한 경우, 일정액을 貯蓄稅額控除로서 차감하게 된다. 또 財產形成貯蓄과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稅額控除가

〈表 9〉 所得의 用途에 따른 所得控除

區 分	內 容
保險料控除	1. 控除對象: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 제외) 2. 適用範圍: 醫療保險과 保障性保險 3. 限 度: 醫療保險料 全額과 人保險에 대한 保險料(年 24만 원)
醫療費控除	1. 控除對象: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 제외) 2. 適用範圍: 本人과 生計를 같이 하는 配偶者 및 扶養家族을 위해 지급한 診察, 診療, 疾病豫防, 醫藥品購入費 3. 限 度: 總給與의 5% 超過分(年 24만 원)
教育費控除	1. 控除對象: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 제외) 2. 適用範圍: 本人의 公納金과 2人 以內의 直系卑屬, 同居入養者, 2人 以內의 兄弟姉妹의 入學金, 授業料, 기타 公納金. 3. 限 度: 教育費全額
寄附金特別控除	1. 控除對象: 居住者 중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綜合所得이 있는 者 2. 適用範圍: 法定寄附金과 指定寄附金 3. 限 度: 法定寄附金은 當該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額 指定寄附金은 不動產所得, 事業所得을 제외한 綜合所得金額의 5%

資料:『所得稅法』(1988. 12. 26 改正, 法律 第4019號).

용인된다. 이와 함께 租稅減免規制法의 규정에 따라 技術 및 人力開發이나 新技術 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 등에 대하여도 稅額控除가 이루어진다.

人的 控除는 累進所得稅의 中要한 要素이지만 所得의 源泉이나 用途에 따른 非課稅, 所得控除 또는 稅額控除 등은 그 太半이 正當性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Pechman (1986, p. 46)]. 즉 그러한 措置는 課稅베이스를 좁혀 일정한 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높은 稅率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措置는 課稅上 優待를 받을 수 있는 方法으로 所得을 積得하거나 支出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事業이나 投資決定에 介入하여 資源分配을 歪曲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取扱하는」 水平의 公平으로부터의 乖離는 慷意的으로 정하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不利한 差別을 받는 納稅者間에 不滿을 고조시키고 추가적인 特別措置를 신설하도록 壓力を 가하게 되어 立法部가 그러한 壓力에 저항하기가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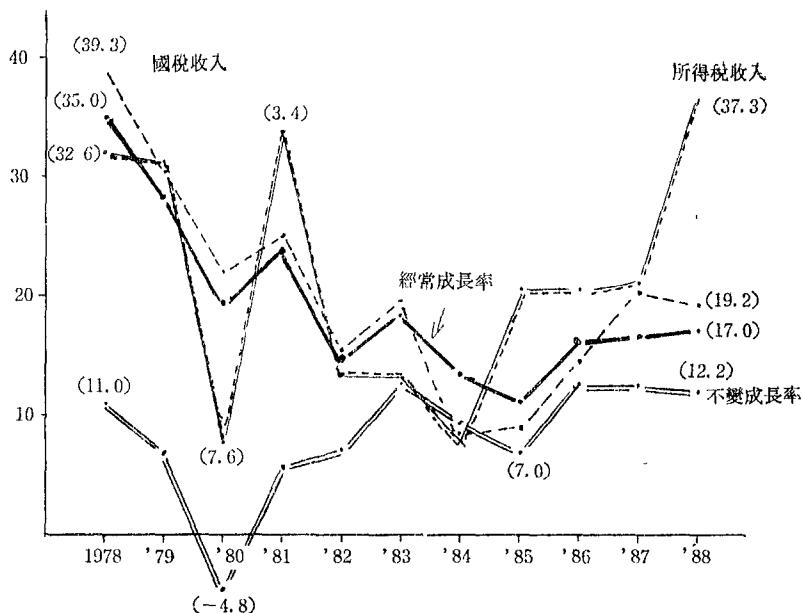
III. 經濟的 效果

所得稅의 經濟的 效果는 보통 첫째로 稅收效果, 둘째로 消費와 貯蓄에 대한 效果, 세째로 勤勞와 投資誘因에 대한 效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稅收效果

所得稅의 中要한 特徵의 하나는 所得稅가 自動的 安定化要因(built-in stabilizer)으로서 景氣의 擴大・收縮의 兩局面에서 稅負擔의 變화를 통하여 個人可處分所得의 變動을 완화하는 構造的 伸縮性을 갖는 데 있다. 즉 好況期에는 稅收가 자연히 증가하여 個人可處分所得의 신장을 억제하고, 거꾸로 不況期에는 稅收의 減退를 통하여 可處分所得의 감소를 완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所得稅의 自動的 伸縮性 때문에 所得稅收入은 國民所得보다 빠른 速度로 늘어나게 되며 景氣變動에 대한 安定化效果와 함께 所得增大에 따라 自動的으로 稅收를 늘리는 effect가 있다. 經濟成長과 所得稅收入 간의 關係는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經常成長率 내지 不變成長率과 所得稅收入의 增加率은 대체로 같은 方向으로 變화하고 있으나 不變成長率이 떨어지는 局面에서는 所得稅收入 增加率이 經常成長率을 밀들고, 不變成長率이 높아지는 局面에서는 所得稅收入 增加率이 經常成長率을 웃도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바로 所得稅가 累進課稅로 인하여 自動的 伸縮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自動的 伸縮性을 稅收의 浮揚性(buoyancy)에 따라 계측



〈그림 1〉 經濟成長率과 稅收入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主要經濟指標』，1989。

하여 보면 1.2274(1978~88년) 내지 1.3031(1983~88년) 이 된다。⁽⁹⁾ 즉 經濟成長率 1% 「포인트」의 上昇은 所得稅의 稅收를 1.2% 내지 1.3% 「포인트」增加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所得稅收入의 浮揚性은 附加價值稅 등 消費課稅系統의 稅收나 所得稅系統의 法人稅보다 크지만 이는 附加價值稅 등 消費課稅가 比例稅率을 적용한다는 것과 消費課稅의 대상이 되는 支出이 所得보다 安定化되는 傾向이 있다는 데에 연유하고 있다. 한편 法人稅收入의 浮揚性도 所得稅와 같이 높은 欲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法人稅도 累進稅率로 課稅되고 經濟成長過程에서 法人部門이 크게 成長하였던 데 기인하고 있다. 1978년 申告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稅率은 一般法人과 公開法人, 非營利法人으로 나누어 20%에서 40%에 이르는 3段階 내지 2段階 累進稅率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 말 稅法改正으로 法人類型에 관계 없이 모두 2段階 超過累進稅率을 적용하도록 改正한 후 1988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複數稅率이 계속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8~88년 기간 중 總法人數는 44,414개法人에서 65,373개法人으로 늘어났고, 法人的 事業年度所得도 1978년의 8,192억원에서 1988년에

(9) 浮揚性(buoyancy)은 國民總生產의 變化率에 대한 稅收變化率의 比率로 규정되어 GNP의 成長에 대한 稅收의 歷史的 反應性을 나타낸다. 그러나 浮揚性은 裁量的, 自動的 稅收效果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稅收의 弹力性과 구별되어야 한다[Chand (1975, p.4)].

〈表 10〉 稅收의 浮揚性

	1978~88	1983~88
國內稅	1.0647	1.0041
所得稅	1.0784	1.0121
法人稅	1.2274	1.3031
附加價值稅	1.2136	1.2996
特別消費稅	0.9881	0.8206
酒稅	0.7888	0.8394
	0.7793	0.8839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主要經濟指標』，1989에 수록된 統計로 계측.

는 9조 9,82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法人部門의 成長과 複數累進稅率의 적용이 法人稅의 稅收彈力性을 높였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稅收의 所得彈力性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稅制變更의 영향을 제거하여야 한다.⁽¹⁰⁾ 우리나라의 所得稅는 1974년 말 稅制改革으로 종래 分類課稅와 綜合課稅로 二元化되어 있던 課稅方法을 綜合課稅로 一元化한 데 이어 1982년 말에 이르기까지 매년 稅制가 변경되었고 1985년 말에 다시 所得稅法이 개정된 후 1988년까지施行되었다. 이같이 頻번한 稅制의 변경은 稅制의 現實符合性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所得稅의 稅率構造와 人的控除額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 먼저 所得稅 稅率構造의 变遷을 보면 1977년 말 稅法改正으로 1978~79년 기간 중에는 最低階級 課稅標準 年 60만원에 대한 8%에서 最高階級 課稅標準 8,400萬원에 대한 70%에 이르는 17段階 超過累進稅率이 적용되었으나 1979년 말 稅法改正으로 最低階級의 課稅標準을 2倍 인상(年 120만원)하는 한편 그 稅率을 6%로 인하하고 最高階級의 課稅標準은 6,000만원으로 인하하여 그 稅率도 62%로 인하되었다. 1979년 말에 개정된

〈表 11〉 所得稅 稅率構造의 变遷

(單位: 萬원, %)

施 行 年 度	稅 階 級 率 數	最 低 階 級		最 高 階 級	
		課 稅 標 準	稅 率	課 稅 標 準	稅 率
1978~79年	17	60	8	8,400	70
1980~81年	17	120	6	6,000	62
1982年	17	120	6	6,000	60
1983~88年	16	180	6	6,000	55

資料：財務部，『租稅概要』，1989. 3.

(10) 稅制改革에 따른 稅收의 裁量的變化 때문에 稅制의 浮揚性은 稅制의 自動的彈力性(built-in elasticity)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裁量的稅收變化를 제거한 稅收를 士臺로 稅收의 弹力性을 計測할 필요가 있다[Baas and Dixon (1974, pp. 1-3)].

〈表 12〉 人的控除制度의 变천

(單位: 만원)

	1978	1979	1980~81	1982~88
基礎控除	24	24	30	30
配偶者控除	24	30	30	42
扶養家族控除(3人)	36	54	72	72
計	84	108	132	144

資料：財務部, 『租稅概要』, 各年度; 同, 『1988 간추린 改正稅法』, 1989.

稅率은 1980년과 1981년에 적용되었으나 1981년 말에 다시 最高限界稅率을 기준의 62%에서 60%로 인하하였다. 끝으로 1982년 말에 最低階級의 課稅標準을 年 180萬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最高稅率을 기준의 60%에서 55%로 인하하는 한편 稅率適用階級을 한 단계 줄여 16단계로 인하하였으며 이 稅率構造는 1983~88년간 적용되었다.

한편 1978~88년 기간 중 所得稅의 人的 控除額도 크게 上向調整되었다. 1978년에는 基礎控除나 配偶者控除가 모두 年 24萬원에 扶養家族控除가 1人當 年 12萬원이었으나 1978년 말 所得稅法改正에서 配偶者控除는 年 30萬원, 扶養家族控除는 1人當 18萬원으로 上向調整되었다. 이어 1979년 말 稅法改正에서는 基礎控除가 年 30萬원, 扶養家族控除가 1人當 24萬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끝으로 1981년 말 所得稅法改正으로 配偶者控除가 年 42萬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그 후에는 1988년 말에 이르기까지 人的 控除水準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1985년 말에는 紙上配當課稅制度의 폐지를 글자로 하는 所得稅法改正이 있었다. 그 밖에 所得稅法의 改正이 없더라도 稅法施行의 內實化를 위해 施行令이 계속 보완, 정비되었다.

〈表 13〉 所得稅의 稅法改正效果와 稅收實績

(單位: 10억 원, %)

	稅法改正前 (A)	稅法改正效果 (B)	豫 算 (C)	實 績 (D)	比 率	
					B/A	(D-C)/C
1978	545.6	△ 38.2	507.6	467.8	7.0	△ 7.8
1979	573.1	△ 23.0	550.1	614.7	4.0	11.7
1980	773.9	△157.3	616.5	661.4	20.3	7.3
1981	859.1	△ 64.0	795.0	886.2	7.4	11.5
1982	1,104.7	△160.0	944.7	1,005.5	14.5	6.4
1983	1,206.9	△122.6 ¹⁾	1,084.3	1,136.1	10.2	4.6
1984	1,258.9	△ 59.5	1,199.4	1,229.1	4.7	2.5
1985	1,350.5	—	1,350.5	1,481.6	—	9.7
1986	1,655.8	△ 52.0	1,603.8	1,784.6	3.1	11.3
1987	1,958.5	△ 33.0	1,925.5	2,158.9	1.7	12.1
1988	2,346.5	△ 75.3	2,271.2	2,964.1	3.2	30.5

資料：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註：1) 1981년 改正效果分 △69.4(10억 원)과 1982년 改正效果分 △53.2 (10억 원)의 合計.

1979~88년 기간 중所得稅法 및 同施行令의 改正에 따른 裁量的 稅收變化의 크기는 〈表13〉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라 所得稅의 稅收彈力性을 계측하여 보면 1978~88년 기간 중에는 1.876, 1983~88년 기간 중에는 1.345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중 所得稅의 稅收는 裁量的 稅收變化로豫算上 減收效果를 나타냈으나 稅收의 所得彈力性이 커기 때문에 항상 稅收實積은豫算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¹¹⁾

2. 貯蓄에 대한 效果

所得稅는所得이消費와 貯蓄 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되기 때문에 可處分所得의 감소를 통하여 貯蓄資金을 감소시키고 또 利子所得에 대한 課稅가 課稅後 利子率을 감소시키게 됨으로 貯蓄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반면에一般消費稅나 Kaldor형 支出稅(expenditure tax)는消費를 늦추거나 단념시킴으로써 納稅를 연기 또는 회피할 수 있어 所得稅보다 貯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所得稅는 大衆課稅이며 納稅額의 대부분은 租稅誘因 때문에 貯蓄을 증가시킬 수 있는 餘地가 거의 없는所得階層으로부터 징수된다. ⁽¹²⁾ 따라서 貯蓄 및 消費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租稅가 갖는 差別的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經濟專門家들은 貯蓄에 대한 課稅後 實質收益이 늘어나게 되면 個人貯蓄이 늘어난다는 計測을 하였으나 다른 經濟專門家들은 그러한 反應이 있더라도 零에 가깝다는 計測을 내놓고 있다. 지배적인 견해는 貯蓄이 收益率의 증가에 반응하되 그 크기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Pechman (1987, p. 77)].

이상과 같이 貯蓄에 대한 所得稅의 효과는 확실치 않으나 협행 稅制에는 다양한 貯蓄誘因이 마련되어 있다.

(1) 金融機關 預金利子에 대한 分離課稅

金融機關 預金利子에 대하여는 10%의 稅率을 적용하여 分離課稅를 한다. 그러나 非營業 貸金利子所得은 25%의 稅率을 적용하여 源泉徵收를 한 후 綜合課稅된다.

(2) 所得稅의 非課稅

家計, 學生 및 農漁民의 貯蓄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特別預金의 利子와 配當金에 대하여는 所得稅가 非課稅된다.

- 獎學積金(未就學兒童 및 國民學生은 1人 50萬원, 中高校學生은 1人 100萬원)

(11) 우리나라의 稅收彈力性에 관한 計測에 대하여는 Tait, Faria, and Heller (1979, p. 19), 車耕權 (1983) 參照.

(12) 1988년도 勤勞所得稅 納稅人員 중 課稅未達者는 49.2%를 전하고, 課稅者의 40%가 月給與額이 30만원 이하인 勤勞者와 日傭勤勞者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入住者貯蓄(一世帶 月 10萬원)

• 信用協同組合 등에 대한 預託金(1,000萬원 한도)의 利子와 出資金(500萬원 한도)의 配當 및 利用高에 따른 配當

(3) 少額家計貯蓄

다음과 같은 少額家計貯蓄에 대하여는 所得稅만을 5%의 稅率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防衛稅, 教育稅, 住民稅는 면제한다.

- 一般家計貯蓄

貯蓄契約期間 1年 이상, 貯蓄元金 500萬원 이하, 1人 1通帳의 要件을 충족하는 銀行의 稅金優待綜合通帳, 郵遞局의 稅金優待通信預金通帳, 相互信用金庫의 稅金優待相互信用金庫綜合通帳에 예입하는 家計貯蓄

- 年金型家計貯蓄

信託契約期間 5년 이상(2년 이내 중도해지분 제외), 信託元金 1,000萬원 이하 1人 1通帳要件을 충족시키는 銀行에서 취급하는 老後生活年金信託

(4) 勤勞者의 住民安定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法律에 의한 支援

- 財產形成貯蓄

月給與額이 60萬원 이하인 者와 日傭勤勞者로써 日給與額이 2萬 4千원 이하인 者를 대상으로 하는 5千원~12萬원 까지의 貯蓄金額(月給與의 30% 한도, 다만 日給與의 30%가 8萬원 이하인 경우 8萬원 한도)과 海外就業者的 5千원~30萬원 까지의 貯蓄金額(月給與의 30%)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租稅上의 支援이 이루어진다.

i) 貯蓄稅額控除

貯蓄額의 15%를 所得額에서 공제

ii) 所得稅 · 相續稅 · 贈與稅 非課稅

貯蓄機關으로부터 받은 利子所得, 配當所得, 貯蓄獎勵金과 事業主로부터 받은 任意獎勵金 · 住宅分讓에 따른 利益에 대하여는 所得稅, 相續稅, 贈與稅가 非課稅된다.

iii) 事業主에 대한 支援

任意獎勵金은 必要經費에 산입하도록 하고 無住宅勤勞者에게 住宅을 分양하였을 경우에는 不當行爲 適用이 배제된다.

• 住宅貯蓄

月給與額 60萬원 이하인 勤勞者와 日給額이 2萬 4千원 이하인 勤勞者 그리고 海外就業勤勞者로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住宅 1개 이하를 소유하는 者가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住宅

의 取得, 貸借, 改良 및 住宅資金 借入金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15만원 이하(月給與額의 3.0%한도)의 住宅貯蓄에 대하여는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相續稅가 非課稅된다.

- 住宅資金償還額에 대한 稅額控除

住宅貯蓄과 동일한 對象者가 長期住宅資金인 住宅新築 및 購入資金(10년 이상), 住宅改良資金(5년 이상) 및 住宅賃借資金(3년 이상)을 상환할 경우 債還額의 10% 상당액을 稅額控除하고 防衛稅를 면제한다.

- 事業主의 住宅補助金

事業主가 無住宅勤勞者의 住宅取得・賃借費用을 補助할 때 損金算入이 용인되고 無住宅勤勞者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非課稅한다. 住宅補助金의 범위는 住宅取得時는 住宅取得價額의 5%, 住宅賃借時에는 住宅賃借資金의 10%로 한다.

(5) 農漁家 목돈마련貯蓄

耕地面積 2ha 이상 耕作農民, 20톤 이상 漁船保有 漁民, 飼育家蓄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養畜家에 해당되지 않는 一般農漁民의 貯蓄金額(月 12만원 한도)과 耕地面積 1ha 이상 耕作農民, 動力船을 사용하는 漁業에 종사하는 漁民, 一般養畜家의 2分의 1을 초과하는 養畜家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低所得農漁民의 貯蓄金額(月 6만원 한도)에 대하여는 貯蓄機關으로부터 받는 利子 또는 貯蓄獎勵金에 대한 所得稅・相續稅・贈與稅를 非課稅한다.

(6) 勤勞者證券貯蓄稅額控除

月定給與 60만원 이하인 勤勞者가 月定給與의 30%(다만 年間貯蓄額이 120만원 미만시에는 120만원 까지)限度 内에서 證券貯蓄을 할 때는 貯蓄金額의 10%를 稅額控除하고 貯蓄期間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配當・利子所得에 대해 所得稅를 非課稅한다.

(7) 우리社株 取得時 稅額控除

우리社株 組合員이 우리社株 組合을 통하여 그 法人的 株式取得을 위해 우리社株 組合에 貯蓄한 金額과 株式取得 후에 株式取得額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社株 組合에 납입한 金額에 대하여는 月定給與額 60만원 이하인 者의 경우 年間給與額의 50%, 月定給與額 60만원 초과자의 경우 年間給與額의 30% 한도 내의 貯蓄金額에 대하여 15%의 稅額控除를 용인한다.

(8) 우리社株 配當所得에 대한 低率分離課稅

우리社株 組合員이 組合을 통하여 당해 法人的 株式을 取得하고, 우리社株 組合員이 少額株主基準에 해당하며, 株式額面價額이 500만원 이내인 동시에 配當所得支給을 현재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에 3년 이상 預託한 우리社株 配當所得에 대하여 所得稅만 5%의 稅率를 적용하여 分離課稅하고 教育稅, 防衛稅, 住民稅를 면제한다.

〈表 14〉 金融貯蓄動向

(單位 : 1,000억 원)

	合 計 ¹⁾	貯蓄性預金 證書(C D)	讓渡性預金 證書(C D)	非銀行貯蓄	國・公 ²⁾ 金融債	株 式	會社債 ²⁾
1978	96.6	51.3	—	31.5	3.8	9.5	5.9
1979	133.6	65.3	—	46.6	5.5	11.7	11.1
1980	186.9	85.8	—	70.6	8.9	13.4	18.4
1981	260.1	115.0	—	106.2	15.2	16.4	25.7
1982	330.2	136.6	—	150.9	26.7	19.2	33.8
1983	408.2	156.7	—	195.0	33.4	23.8	44.1
1984	494.1	173.1	6.8	250.3	41.8	28.6	53.3
1985	597.6	202.5	10.8	314.9	49.9	21.6	72.0
1986	750.0	245.9	13.1	426.7	62.2	40.0	85.5
1987	960.4	297.0	16.6	556.3	76.3	59.0	99.2
1988	1,266.5	365.1	17.5	758.5	86.2	136.7	116.9
(增加倍數)							
1978~88	13.11	7.12	—	24.08	22.68	14.39	19.81
1983~88	3.10	2.33	—	3.89	2.59	5.74	2.65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87. 12; 同, 1989. 12.

註: 1) 部門間去來를 제외한 純計.

2) 純發行額.

우리나라 金融貯蓄의 動向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金融貯蓄 규모는 13倍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그러한 金融貯蓄의 증대는 주로 非銀行貯蓄과 國・公債 및 金融債, 會社債 그리고

〈表 15〉 預金銀行種別貯蓄性預金

(單位 : 1,000억 원)

	合 計	定期預金	定期積金 ¹⁾	相互賦金	財形貯蓄	住宅賦金 ²⁾	自由貯蓄 預 金
1978	51.3	21.1	16.8	1.6	2.1	0.4	—
1979	65.3	26.3	22.7	2.0	2.8	0.4	—
1980	85.8	39.2	24.1	2.4	4.3	0.7	—
1981	115.0	52.9	27.4	3.2	6.3	1.1	—
1982	136.6	62.7	24.4	4.5	10.8	1.6	—
1983	156.7	70.7	22.3	7.5	16.3	2.4	—
1984	173.1	75.5	20.7	11.7	19.6	3.4	—
1985	202.5	73.7	22.5	15.6	21.6	4.3	35.6
1986	245.9	74.4	30.5	18.5	27.9	5.2	60.5
1987	297.0	78.1	39.9	21.5	33.8	6.3	84.6
1988	365.1	104.8	47.0	27.6	30.7	7.7	99.0
(增加倍數)							
1978~88	7.12	4.96	2.80	17.25	14.62	9.25	—
1983~88	2.33	1.48	2.11	3.68	1.88	3.21	—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81; 同, 1989.

註: 1) 1981년부터 家計優待定期積金 포함.

2) 1981년부터 勤勞者住宅마련貯蓄 포함.

株式 등 金融資產保有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였다. 이같이 金融貯蓄의 증대가 貯蓄性預金보다 非銀行貯蓄이나 證券保有 형태로 증가하였던 것은 銀行에 비해 第2金融圈의 金利나 國公債 및 會社債收益率이 높게 책정된 것이나 株式的 資本利得을 포함하는 株式投資收益率에 높았던 테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金融貯蓄의 증대가 分離課稅와 資本利得에 대한 非課稅 그리고 貯蓄獎勵를 위한 租稅誘因과 같은 優待措置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는 貯蓄性預金을 種別로 볼 때 貯蓄獎勵를 위한 稅制上의 優待措置가 집중적으로 공여되고 있는 住宅賦金이나 財形貯蓄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테에서도 알 수 있다.

3. 勞動供給에 대한 影響

所得稅가 勞動意欲에 미치는 效果는 租稅가 納稅者의 實質所得을 인하하는 所得效果와 限界的인 勞動의 價值를 떨어뜨리는 代替效果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純效果를 평가하는 일이란 용이하지 않다. 所得稅가 納稅者의 實質所得을 감소시키게 되면 納稅者는 課稅前 所得水準을 유지하기 위해 餘暇를 감소시켜 勞動時間은 늘리게 될 수도 있다. 그 반면에 高率課稅로 限界的인 勞動의 價值가 떨어지게 되면 勞動보다 餘暇를 선택하게 되어 勞動意欲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所得效果는 平均稅率에 의해 결정되고 代替效果는 限界稅率에 의존하기 때문에 所得稅가 勞動意欲에 미치는 效果가 가장 큰 所得層은 代替效果가 所得效果보다 압도적으로 큰 高所得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限界稅率과 平均稅率의 隔差가 가장 큰 所得層에서 반드시 所得稅에 의한 經濟的 損失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찌면 限界稅率이 가장 높고 또 그러기 때문에 代替效果가 가장 큰 所得層에서 많은 經濟的 損失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으며 所得稅가 勤勞意欲에 미치는 經濟的 損失의 總額은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納稅者의 數와 代替效果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Kay and King (1983, p. 42)].

그리나 所得稅는 勞動誘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要因의 하나에 불과하며 勞動誘因에 대한 所得稅의 효과를 計量分析이나 面接調查를 통하여 實證的으로 研究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勞動慣行은 쉽게 변화하지 않고 近代產業社會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稅率變更에 내하여 勞動時間이나 그 意欲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餘地를 거의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 所得稅의 課稅者比率을 보면 勤勞所得稅의 納稅人員은 1987년 現세 總所得者의 48.4%에 머물고 있다. 이 課稅者比率은 1980년에 32.1%에 불과하였으나 1982년부터 人的控除水準이 固定됨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課稅者比率은 계속 높아졌다.

〈表 16〉 勤勞所得稅 納稅人員의 推移

(單位 : 千名, %)

所得歸屬年度	總 所 得 者	課 稅 未 達		課 稅	
		人 員	構 成 比	人 員	構 成 比
1980	7,258	4,926	67.9	2,333	32.1
1981	7,431	4,346	58.5	3,085	41.5
1982	7,659	4,495	58.7	3,164	41.3
1983	7,916	4,495	56.8	3,421	43.2
1984	8,294	4,574	55.1	3,720	44.9
1985	8,510	4,573	53.7	3,937	46.3
1986	9,094	4,810	52.9	4,284	47.1
1987	9,841	5,080	51.6	4,761	48.4

資料：經濟企劃院豫算室，『財政關聯統計集』，1989. 10.

한편 綜合所得稅 納稅人員의 推移를 보면 1988년에 있어서도 總所得者는 2배만명을 다소 넘고 있고 그 중에서 年間所得金額이 所得控除額에 미달되는 納稅者를 제외한 綜合所得稅 課稅者는 70만명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며 그 課稅者比率은 34.1%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기 綜合所得稅의 納稅人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課稅人員比率은 80년대 전반기의 35%를 전후하는 水準에서 80년대 후반기에는 33~34% 水準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所得稅 課稅者比率은 1988년 현재 50.8%(勤勞所得者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先進諸國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81% 이상 87% 水準에 달하고 있다. 所得稅 課稅者比率이 낮다는 것은 많은所得者가 所得課稅와 無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低所得層(1988년 현재 勤勞所得稅 課稅未達者 49.2%에 해당하는 階層)에 관한 한 所得稅가 勞動意欲에 미

〈表 17〉 綜合所得稅 納稅人員의 推移

(單位 : 千名, %)

所得歸屬年度	總 所 得 者 ¹⁾	課 稅 未 達 ²⁾		課 稅	
		人 員	構 成 比	人 員	構 成 比
1980	1,443	942	65.3	501	34.7
1981	1,434	897	62.6	537	37.4
1982	1,656	1,093	66.0	563	34.0
1983	1,688	1,066	63.2	622	36.8
1984	1,734	1,114	64.2	620	35.8
1985	1,789	1,145	64.0	644	36.0
1986	1,866	1,197	64.1	669	35.9
1987	2,008	1,342	66.8	666	33.2
1988	2,074	1,367	65.9	707	34.1

資料：國稅廳，『國稅統計年報』，各年度。

註：1) 分離課稅所得者，源泉徵收對象 勤勞所得판 있는 者 제외。

2) 年間所得金額이 所得控除額에 未達되는 納稅者。

〈表 18〉所得稅 課稅者比率 (單位 : %)

國	別	年 度	比 率
韓	國 ¹⁾	1988	50.8
日	本	1987	85.3
美	國	1985	81.5
英	國	1983	87.5
프 랑 스		1983	70.4

資料：財務部。

註：1) 勤勞所得者。

치는 效果는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限界稅率이 平均稅率보다 훨씬 높은 高所得層에 대하여는 所得稅가 勞動意欲을 감퇴시킬 餘地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計量分析이나 面接調查에 의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4. 投資誘因에 대한效果

1988년 현재 個人事業者는 1,412,490名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綜合所得稅 申告人員은 681,693名에 달하고 있다. 또 1988년 6월말 현재 上場株式總數 1,998.2百萬株의 68%는 個人에 의하여 保有되었고 1988년도에 株式人口는 株主名簿上 700萬名을 상회하였다. 또한 1988년간 國內 非金融部門의 資金供給 總額 42조원의 55.6%는 個人部門에 의해 공급되었으며, 國內 非金融部門의 資金調達總額 34조원의 32.5%는 證券發行에 의해, 그 25.2%는 非通貨金融機關의 金融商品賣出이나 債券發行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高率의 所得稅는 危險負擔의 증대로 純報酬를 감소시켜 投資誘因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 있다. 한편 高率의 所得稅는 課稅後 可處分所得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實質所得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投資를 늘리는 正의 誘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效果는 서로 相殺되는 경향이 있어 어느 效果가 보다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基準은 없다

〈表 19〉所得種類別 實效稅率(1988 歸屬年度)¹⁾

(單位 : %)

區 分	實 效 稅 率	區 分	實 效 稅 率
綜 合 所 得	16.8	利 子 所 得	9.9(9.8)
事 業 所 得	15.9	配 當 所 得	14.3(10.7)
讓 渡 所 得	27.7	其 他 所 得	3.3
勤 勞 所 得	6.5(3.2)		

資料：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9.

註：1) 綜合所得・事業所得・讓渡所得・勤勞所得은 所得增額에 대한 決定稅額의 比率, 기타는 源泉徵收 課稅標準額에 대한 試課稅額의 比率. ()는 課稅標準額에 대한 算出稅額의 比率.

[Pechman (1986, p. 48)].

그런데 所得種類別 實效稅率을 비교하여 보면 讓渡所得을 제외하고 事業所得이나 利子所得, 配當所得에 대한 實效稅率이 모두 綜合所得에 대한 實效稅率보다 낮다. 뿐만 아니라 事業所得과 利子配當所得 간에도 實效稅率의 차이가 6%에서 1.6%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讓渡所得課稅가 實現된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인 동시에 그 價額이 低評價되고 있는事實이나 株式의 資本利得에 대하여는 非課稅하고 있는 事實을 감안할 때 金融資產所得에 低率分離課稅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所得稅가 土地保有나 金融資產保有에 대하여 「플러스」의 誘因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構造上의 問題

所得稅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所得稅는 公平이나 效率 또는 簡易化와 같은目標에 비추어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所得稅의 發展過程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問題는 각국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所得稅의 몇 가지 構造上의 問題는 실제에 있어서 각국에 共通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課稅單位와 個個人의 費用控除 또는 特別控除, 資本利得과 損失, 法人稅와의 關係, 變動所得 등에 관한 問題가 그러한 것이다.⁽¹³⁾

이러한 構造上의 問題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所得稅의 公平確保에 있어서나 效率的 賦課 그리고 簡素化에 있어서 큰 前進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所得稅의 現狀에 비추어 보아 특히 두 가지 構造上의 問題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所得源泉에 따른 差別課稅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의 正常化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金融實名去來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所得稅의 構造的 問題를 시정하고자 하는 구상에서 생겨났던 것이다.⁽¹⁴⁾

1. 差別課稅의 止揚과 包括的 課稅

1988年 속연도 綜合所得稅 決定資料에 의하면 綜合所得稅의 平均稅率은 16.8%에 달하였고, 同年度의 最高限界稅率은 55%였다. 그러나 利子・配當所得의 平均稅率은 9.9%에 지

(13) 各國稅制에 共通되고 있는 構造의 問題에 대하여는 尹建永(1987)을 參照。

(14)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1982년 12월 31일) 公布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非實名金融資產所得에 대한 높은 差等課稅措置가 실시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實名去來를 施行하도록 明示되었으나 그 施行이 1991년 1월 1일로 연기된 후 1990년 4월에는 「與件成熟時」까지 그 施行이 留保되었다.

나지 않았고 分離課稅率은 10%였다. 더우기 1988년 속연도 綜合所得稅의 申告所得金額은 5조 68억원에 달하였으나, 分離課稅된 利子·配當所得金額은 4조 6,982억원에 이르렀다. 즉 綜合所得稅 申告所得金額의 93.8%에 상당하는 金融資產所得이 分離課稅率 10%를 적용 과세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金融資產所得에 대한 分離課稅가 존속되는 한 所得稅의 水平的 公平은 實現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所得稅의 垂直的 公平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所得分配의 不平等은 더욱 深化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稅制가 所得再分配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疑問⁽¹⁵⁾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稅制가 水平的 公平을 실현하는 동시에 所得分配狀態의 惡化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社會的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우기 오늘날 所得稅制의 改革에 있어서 時代의潮流는 包括的 所得稅(comprehensive income tax)로의 改革에 집중되고 있다.⁽¹⁶⁾ 包括的 課稅의 구상은 모든 所得에 課稅하고 人的控除와 支給能力을 불가피하게 감퇴시키게 될 個人的 費用控除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費用控除나 特別控除 또는 稅額控除를 용인하지 않는 包括的 課稅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所得稅를 부과하자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이같이 包括的 課稅베이스의 채택으로 課稅標準이 증대되면 稅率의 대폭 引下가 가능하고 또 稅率段階를 대폭 축소하거나 單一稅率(flat)化에 의하여 所得稅의 簡素化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이같은 單一稅率化는 첫째로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즉 인플레가 納稅者를 보다 높은 稅率區分으로 밀어올리게 되는 稅率上昇을 회피 할 수 있어 稅率區分을 인플레에 대하여 조정할 必要가 없게 된다. 둘째로 급격한 超過累進稅率構造와 資產所得課稅 혹은 事業所得課稅를 中心으로 한 각종 負擔輕減措置나 累進緩和措置를 清算함으로써 垂直的 公平과 함께 水平的 公平을 확보할 수 있고, 效率性의 向上과 稅制의 簡素化를 통하여 勤勞所得稅化하고 있는 현행 所得稅에서 생겨나고 있는 勤勞所得者의 重稅感 및 不公平感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包括的 課稅에 관한 提案은 「純粹主義者の 꿈」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Pechman (1986, p. 66)]. 대표적인 包括的 所得稅에 관한 提案은 1966년 「카터」(Carter) 報告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르면 包括的 所得稅의 課稅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i) 法人所得은 모두 個人에 歸屬된다.

(15) 이러한 疑問은 所得稅제나 相續稅제가 不完全한 데서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

(16) 그 代表적인 例가 1986년에 實시된 美國의 稅制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稅制改革은 包括的 所得稅제의 지향으로 公平, 中立性, 簡素化라는 세 가지 目標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 ii) 被傭者所得에는 賃金, 債給, 賞與 등 貨幣形態의 勤勞所得과 함께 雇傭主가 부담하는 現物給付나 年金・健康保險에 대한 酒出金 등 附加給付(fringe benefit)도 포함된다.
- iii) 資產所得에는 利子・配當・賃貸料와 같은 所得 외에 資產賣却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도 포함된다.
- iv) 事業所得의 計算에 있어서는 명확한 企業會計原則을 적용함으로써 자의적인 規定에 의한 準備金이나 充當金을 정리하는 한편 非事業的 支出(個人的 支出)의 控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制限이 가해져야 한다.
- v) 遺產이나 贈與도 課稅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 vi) 社會保障給付 등 政府의 移轉支出도 課稅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 vii) 個人的 退職年金에 대한 酒出에 대하여는 社會目的의 달성을 위해 特別控除를 용인하되 엄격한 控除限度를 설정하여 高額所得者の 亂用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勤勞所得은 經費控除의 否認이나 源泉徵收로 個人事業者에 비하여 과대한 稅負擔이 과하여지고 있음으로 합리적인 經費控除가 용인될 필요가 있다.

2. 理論과 現實의 乖離

包括的 所得稅의 課稅베이스는 사이몬스(H.C. Simons)의 所得定義에 따르고 있다. 즉 「個人所得은 消費를 통하여 행사된 權利의 市場價值와 當該期間에 있어서의 資產價值變化의 合計로 定義될 수 있다.」 이 個人所得의 定義는 바로 包括的 所得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項은 個人的 消費額에 資產價值의 變化額을 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Simons (1938, p. 50)]. 包括的 所得稅의 課稅베이스는 이러한 所得定義에 따라 個人이 財貨・用役을 마음대로 채分할 수 있는 能力, 즉 經濟力이나 消費能力이라고 보는 所得概念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包括的 所得稅의 理想的인 所得定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實際的인 難點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包括的 所得稅에 있어서는 法人企業으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이 모두 個人株主에 歸屬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配當이나 社內留保를 불문하고 法人所得을 個人株主에 할당하여야 하는 事務上의 煩雜이 있고 또 法人企業의 損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둘째로 包括的 所得稅의 課稅베이스에는 資本利得도 全額 포함된다. 그런데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는 새로운 많은 問題와 함께 行政上의 問題를 유발한다. 現행 稅制下에서 資本利得은 보통 實現된 資本利得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包括的 所得稅下에서는 매년 資本利得의 發生額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構想을 實行에 옮긴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Kay and King (1983, p. 75)], 資本利得을 發生時點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매년

資產에 대한 評價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土地나 家屋 등 非流動的 資產의 所有者는 資產을 處分하지 않는 限 納稅할 수 없으므로 다시 實現時點의 資本利得課稅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資本利得은 時間을 통하여 고르게 발생하지 않고 一時에 한 데어리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여 平均課稅方法을 도입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 밖에 資本利得이 과세하게 되면 당연히 資本損失은 課稅所得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라 最高所得層이 상당 기간 稅負擔을 안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다.⁽¹⁷⁾

세째로 包括的 所得稅는 附加給付(fringe benefit)도 課稅베이스에 포함시키게 되지만 現物給與에 대한 課稅는 現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째로 遺產이나 贈與도 經濟力を 증가시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包括的 所得稅의 課稅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遺產이나 贈與의 時點을 受取人이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個人所得은 그 時點에 따라 크게 變動할 수 밖에 없다. 그 結果로 累進稅率下에서는 같은 金額을 平均하여 받은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稅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包括的 所得稅下에서는 遺產이나 贈與에 대해 所得의 平均化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所得의 平均化措置는 어떠한 方法을 이용하든지 納稅協力과 執行上의 어려운 問題를 만들어낸다.⁽¹⁸⁾

이상과 같은 課稅所得의 定義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調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만일 稅率構造나 資產所得에 대한 인플레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過程에서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가 생겨나고 또 資產의 「인플레」利得에 대한 課稅가 발생하게 되어 課稅의 公平이나 經濟的 中立性이란 관점에서所得稅의 惡影響이 생겨날 수 있다. 「브래킷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課稅最低限과 稅率適用所得金額의 幅에 대하여 인플레調整을 하든가 또는 單一稅率(flat rate)構造를 도입하여야 한다.⁽¹⁹⁾ 또 資產의 인플레利得에 대한 課稅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資本利得의 課稅에 있어서 資產의 取得價格에 대한 인플레調整이 필요하고 利子所得에 대하여도 무엇인가 인플레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減價償却이나 在庫評價에 있어서도 인플레

(17) 最高所得層에 속하는 株式投資家가 단지 株價下落에 따른 資本損失을 잘라 버리기 위해 株式을 賣却하게 되는 경우에도 包括的 所得이 負의 積을 가지게 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8) 公正이란 관점에서 所得의 平均化措置는 여러 가지 결합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所得의 增加에 대하여는 平均화가 되나 所得의 減少에 대해서는 平均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所得의 平均化가 다수의 納稅者에 적용되면 대폭적인 稅收減少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19) 單一稅率(flat rate)의 導入은 水平的 公平과 租稅의 中立性을 높일 수 있으나 累進課稅原則을 후퇴시킬 수 밖에 없다.

利得을 배제하기 위한 인플레調整이 필요하게 된다. 이같이 實質所得에 한하여 課稅하고자 할 때는 稅率構造나 그 밖의 資產에 대한 인플레調整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行政的으로 매우 煩雜한 문제도 생겨나게 된다.

그 밖에 包括的 所得稅는 여러 經濟單位가 稟得하고 있는 投資所得을 모두 그 궁극적 归着先인 個人에 归屬시켜 적절하게 課稅할 것을 요구하지만 投資所得을 個人에 归屬시키는 일도 용이하지는 않다.

V. 맷음말

包括的 所得稅에 관한 提案은 所得稅의 理想型에 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包括的 所得稅가 制度化되고 執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理論과 實際가 큰 乖離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包括的 所得稅에 부분적으로라도 移行하게 되면 勤勞所得에 대하여 높은 稅金이 부과되는 반면에 金融資產所得에 대하여는 輕課하고 資本利得에 대하여 불완전하고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不公平과 課稅의 非效率을 시정할 수 있다.

물론 配當・利子所得에 대한 分離課稅를 지양하여 綜合課稅를 하는 일이나 株式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을 과세하는 일은 既得權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反對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問題는 중요하며 줄달리기의 결과는 國民의 幸福을 위해 중요하다. 包括的 所得稅에의 改革은 보다 큰 水平의 公平, 보다 작은 複雜性 그리고 經濟活動의 개선을 가져다 주게 된다.」[Pechman (1986, p. 67)] 우리는 金融實名制를 실시하여야 할 當爲性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1979~1988.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89.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78~88.

財務部, 『稅制發展研究報告書』, 稅制發展審議委員會, 1985.

_____, 『租稅概要』, 1987. 11, 1989. 3.

_____, 『1988 간추린 稅法改正』, 1989.

韓國租稅研究所,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調查報告書 第3輯, 1988.

郭泰元·金冕圭, 『所得課稅分野』,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韓國稅務士會附設 韓國租稅研究所, 1988.

- 尹建永, 『韓國의所得稅制와 法人稅制의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7.
- 車斬權, 「黑字經濟下의 稅制改編方向」, 『黑字經濟下의 稅制改編方向(上)』, 全國經濟人聯合會, 1988.
- _____, 『稅收推計模型의 精密화와 中·短期稅收展望』, 韓國經濟研究院, 1983.
- 崔 洪, 「個人所得稅制의 改編方向」, 『黑字經濟下의 稅制改編方向(上)』, 全國經濟人聯合會, 1988.
- 崔明根·李俊求·崔 洪·李龍煥, 『經濟體質強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韓國經濟研究院, 1985.
- Baas, H.J., and Dixon, D.A., "The Elasticity of the British Tax System, 1950/51~1970/71," IMF DM/74/96, 1974.
- Carter Commission,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Ottawa, 1966.
- Chand, S.K., "Some Procedures for Forecasting Tax Revenue in Developing Countries," IMF DM/75/91, 1975.
- Goode, R., *The Individual Income Tax* (rev., ed.), The Brookings, 1976.
- Kay, J.A., and King, M.A., *The British Tax System*, Oxford Univ. Press, 1983.
- Pechman, J.A., *The Rich, The Poor, and the Taxes They Pay*, Westview Press, 1986.
- _____, *Federal Tax Policy* (5th ed.), The Brookings, 1987.
- OECD, *Personal Income Tax Systems under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Paris: OECD, 1986.
- Simons, H.C., *Personal Income Taxatron*, Univ. of Chicago Press, 1938.
- Tait, A. A., Faria, A.G., and Heller, D.S., "Korea: Taxes in the 1980s," IMF, July 26, 1979.